

제 2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회사 정관 제 16 조에 의거하여 당사 제 27 기(2025.1.1 ~ 202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6 년 3 월 26 일(수) 오전 10 시

2.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 한화엔진(주) 기술센터 컨퍼런스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제 27 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 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제 2-2 호 의안) 개최방식 추가의 건 (전자주주총회 반영)
(제 2-3 호 의안) 의결권 대리행사 추가의 건 (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제 2-4 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분리선임 인원 변경 및 의결권 제한)
(제 2-5 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제 2-6 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 반영
(제 2-7 호 의안) 동등배당 기준 반영
(제 2-8 호 의안) 부칙 변경
-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사내이사 강민욱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사내이사 김진영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임성빈 선임의 건
(제 3-4 호 의안) 사외이사 유가영 선임의 건
- 제 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사외이사 김용환 선임의 건
(제 4-2 호 의안) 사외이사 김종환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가영 선임의 건
- 제 6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 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URL
: 「 <https://vote.samsungpop.com> 」

<QR 코드>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 년 3 월 16 일 ~ 2026 년 3 월 25 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만 가능)
- 다. 주주 본인 인증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본인 인증 방법: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전화(PASS) 인증
-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 조 제 2 항)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6년 2월 25일



한 화 엔 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종 서

직인
생략

[첨부 1] 제 27 기 별도·연결재무제표

[K-IFRS 연결기준]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2.31)	제 26 기(2024.12.31)
자산총계	1,695,690,258,649	1,413,101,954,226
I. 유동자산	1,031,851,253,359	785,001,242,520
II. 비유동자산	663,839,005,290	628,100,711,706
부채총계	1,139,587,358,725	1,019,806,164,340
I. 유동부채	611,221,290,477	586,563,184,908
II. 비유동부채	528,366,068,248	433,242,979,432
자본총계	556,102,899,924	393,295,789,886
I. 자본금	83,447,142,000	83,447,142,000
II. 자본잉여금	352,820,976,535	350,248,552,157
III. 기타자본항목	(54,909,839,886)	(54,909,839,88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4,457,580,302	85,556,135,854
V. 이익잉여금(결손금)	90,287,040,973	(71,046,200,239)
부채와자본총계	1,695,690,258,649	1,413,101,954,226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1~12.31)	제 26 기(2024.1.1~12.31)
I. 매출액	1,371,057,336,146	1,202,204,707,511
II. 매출원가	1,185,592,083,481	1,085,864,356,443
III. 판매비와관리비	55,398,956,565	44,808,629,876
IV. 영업이익	130,066,296,100	71,531,721,19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766,144,772	77,354,103,221
VI. 당기순이익	173,753,426,631	79,159,548,487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4.1.1 (전기초)	71,543,994,000	273,460,959,097	(54,909,839,886)	85,311,493,597	(151,258,315,672)	224,148,291,136
전기변동	11,903,148,000	76,787,593,060	-	244,642,257	80,212,115,433	169,147,498,750
2024.12.31(전기말)	83,447,142,000	350,248,552,157	(54,909,839,886)	85,556,135,854	(71,046,200,239)	393,295,789,886
2025.1.1 (당기초)	83,447,142,000	350,248,552,157	(54,909,839,886)	85,556,135,854	(71,046,200,239)	393,295,789,886
당기변동	-	2,572,424,378	-	(1,098,555,552)	161,333,241,212	162,807,110,038
2025.12.31(당기말)	83,447,142,000	352,820,976,535	(54,909,839,886)	84,457,580,302	90,287,040,973	556,102,899,924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1~12.31)	제 26 기(2024.1.1~12.31)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0,318,677,509	90,375,704,93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119,961,346)	(4,313,730,25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265,156,744)	(57,294,452,673)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3,226,723,933)	1,401,733,133
V. 현금의 증가(감소)	143,706,835,486	30,169,255,142
VI. 기초의 현금	133,001,192,448	102,831,937,306
VII. 기말의 현금	276,708,027,934	133,001,192,448

[K-IFRS 별도기준]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2.31)	제 26 기(2024.12.31)
자산총계	1,695,694,542,049	1,413,101,954,226
I. 유동자산	1,031,851,253,359	785,001,242,520
II. 비유동자산	663,843,288,690	628,100,711,706
부채총계	1,139,591,642,125	1,019,806,164,340
I. 유동부채	611,225,573,877	586,563,184,908
II. 비유동부채	528,366,068,248	433,242,979,432
자본총계	556,102,899,924	393,295,789,886
I. 자본금	83,447,142,000	83,447,142,000
II. 자본잉여금	352,820,976,535	350,248,552,157
III. 기타자본항목	(54,909,839,886)	(54,909,839,88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4,457,580,302	85,556,135,854
V. 이익잉여금(결손금)	90,287,040,973	(71,046,200,239)
부채와자본총계	1,695,694,542,049	1,413,101,954,226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1~12.31)	제 26 기(2024.1.1~12.31)
I. 매출액	1,371,057,336,146	1,202,204,707,511
II. 매출원가	1,185,592,083,481	1,085,864,356,443
III. 판매비와관리비	55,398,956,565	44,808,629,876
IV. 영업이익	130,066,296,100	71,531,721,19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766,144,772	77,354,103,221
VI. 당기순이익	173,753,426,631	79,159,548,487

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4.1.1 (전기초)	71,543,994,000	273,460,959,097	(54,909,839,886)	85,311,493,597	(151,258,315,672)	224,148,291,136
전기변동	11,903,148,000	76,787,593,060	-	244,642,257	80,212,115,433	169,147,498,750
2024.12.31(전기말)	83,447,142,000	350,248,552,157	(54,909,839,886)	85,556,135,854	(71,046,200,239)	393,295,789,886
2025.1.1 (당기초)	83,447,142,000	350,248,552,157	(54,909,839,886)	85,556,135,854	(71,046,200,239)	393,295,789,886
당기변동	-	2,572,424,378	-	(1,098,555,552)	161,333,241,212	162,807,110,038
2025.12.31(당기말)	83,447,142,000	352,820,976,535	(54,909,839,886)	84,457,580,302	90,287,040,973	556,102,899,924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1~12.31)	제 26 기(2024.1.1~12.31)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0,318,677,509	90,375,704,938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119,961,346)	(4,313,730,25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265,156,744)	(57,294,452,673)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3,226,723,933)	1,401,733,133
V. 현금의 증가(감소)	143,706,835,486	30,169,255,142
VI. 기초의 현금	133,001,192,448	102,831,937,306
VII. 기말의 현금	276,708,027,934	133,001,192,44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원]

과 목	제 27 기(2025.1.1~12.31)	제 26 기(2024.1.1~12.31)
I. 미처리이익잉여금(결손금)	86,387,040,973	(74,946,200,239)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4,946,200,239)	(155,158,315,672)
2. 연결범위변동	-	-
3. 당기순이익	173,753,426,631	79,159,548,487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420,185,419)	1,052,566,946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6,387,040,973	(74,946,200,239)

- 상기 내용은 요약 재무제표이며,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는 2026년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engine.com> 투자정보 > 재무정보 > 감사보고서)에도 게재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시와 순서에 따라 작성함. (K-IFRS 1001 호 문단 112)

일반사항 및 회계정책

- 지배회사의 주요 연혁 및 주주 구성
- 중요 회계추정 및 회계정책을 포함한 계정과목별 회계기준
- 재무위험관리

손익계산서

- 수익/비용의 구성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내역
- 금융 및 기타 영업외손익 세부내역
- 법인세비용(수익) 구성내역
- 주당손익 산출내역

재무상태표

- 사용제한 금융상품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 재고자산 구성 및 기중 변동내역
- 유가증권 구성 및 기중 변동내역
- 파생상품 구성 및 평가내역
- 금융상품 범주별 구분 및 범주별 손익
- 종속기업 및 관계회사 투자 및 변동내역
-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구성 및 변동내역
- 리스자산 구성 및 변동내역
- 기타자산·부채 구성 및 변동내역
- 차입금 구성 및 변동내역
- 확정급여채무 및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
- 자본 구성요소 및 변동내역

기타

-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
-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자산
-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
- 현금흐름 구성내역
- 보고후 사건

※ 상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관 일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 2-1 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사외이사 → 독립이사)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25 조(이사의 수)</p> <p>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인 이내로 하고, <u>사외이사</u>는 (후략)</p>	<p>제 25 조(이사의 수)</p> <p>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인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u>는 (후략)</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p>제 26 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p> <p>①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사외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사외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사외이사</u>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 26 조의 2(독립이사 후보의 추천)</p> <p>①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u>독립이사</u>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u>독립이사</u>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독립이사</u>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p>제 28 조(이사의 보선)</p> <p>② <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 28 조(이사의 보선)</p> <p>② <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p>제 30 조의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p> <p>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u>사외이사</u>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제 30 조의 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p> <p>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u>독립이사</u>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p>제 34 조(위원회)</p> <p>① <u>이</u>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u>사외이사</u>후보 추천위원회</p> <p>2. 감사위원회</p>	<p>제 34 조(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p>1. <u>독립이사</u>후보 추천위원회</p> <p>2. 감사위원회</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u>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u>이어야 하고, <u>사외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p> <p>④~⑦ 생략</p> <p>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사외이사</u>이어야 한다.</p> <p>⑨ <u>사외이사</u>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u>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u>이어야 하고, <u>독립이사</u>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p> <p>④~⑦ 생략</p> <p>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u>독립이사</u>이어야 한다.</p> <p>⑨ <u>독립이사</u>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 2-2 호 의안) 개최방식 추가의 건 (전자주주총회 반영)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17 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p> <p>⑤(신설)</p>	<p>제 17 조(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p> <p>⑤ <u>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제 2-3 호 의안) 의결권 대리행사 추가의 건 (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20 조(의결권)</p> <p>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u>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0 조(의결권)</p> <p>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제 2-4 호 의안) 감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분리선임 인원 변경 및 의결권 제한)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25 조(이사의 수)</p> <p>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u>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u>으로 한다.</p>	<p>제 25 조(이사의 수)</p> <p>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5 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u>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u>으로 한다.</p>	<p>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변경(1/4→1/3)</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u>,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u>그의 특수관계인</u>,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p>

(제 2-5 호 의안) 이사의 임기 변경의 건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27 조 (이사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u>취임 후 2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u>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이사의 임기가 <u>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u></p>	<p>제 27 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u>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u></p> <p>② 삭제</p>	<p>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임기 연장</p>

(제 2-6 호 의안) 배당절차 개선 반영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	-------	------

<p>제 42 조 (이익배당)</p> <p>③ <u>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u></p>	<p>제 42 조 (이익배당)</p> <p>③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p>
<p>제 43 조 (분기배당)</p> <p>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u>현재의 주주에게</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 <u>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u></p> <p>② <u>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 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u></p>	<p>제 43 조 (분기배당)</p> <p>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부터 <u>45 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u>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p>

(제 2-7 호 의안) 동등배당 기준 반영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제 6 조의 2(이익배당우선주식)</p> <p>③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u>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8 조의 3 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제 6 조의 2(이익배당우선주식)</p> <p>③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p> <p><u>(후단 삭제)</u></p>	<p>제 8 조의 3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p>
<p>제 6 조의 3(전환주식)</p> <p>⑩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8 조의 3(신주의배당기산일) 제 1 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제 6 조의 3(전환주식)</p> <p><u>(삭제)</u></p>	<p>제 8 조의 3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p>

<p>제 8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p> <p>㉑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㉒ 생략</p>	<p>제 8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p> <p>(삭제)</p> <p>㉑ 좌동</p>	<p>제 8 조의 3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p>
<p>제 8 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p> <p><u>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제 8 조의 3(동등배당)</p> <p><u>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p>	<p>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내용 반영</p>
<p>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p> <p>㉑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p> <p>㉑ <u>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p>	<p>제 8 조의 3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p>
<p>제 14 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㉑ <u>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8 조의 3 제 1 항의 규정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u></p>	<p>제 14 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삭제)</p>	<p>제 8 조의 3 (동등배당) 반영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p>

(제 2-8 호 의안) 부칙 변경

현행(변경전)	변경(안)	개정사유
<p>부칙 제 1 조(시행일)</p> <p>이 정관은 <u>2025년 03월 26일</u>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 1 조(시행일)</p> <p>이 정관은 <u>2026년 03월 26일</u>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 2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p> <p><u>제 17 조, 제 20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부칙 제 3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p> <p><u>제 25 조, 제 26 조의 2, 제 28 조, 제 30 조의 2, 제 36 조 제 3 항·8 항·9 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5 조 제</u></p>	<p>시행일 변경 및 관련 조항 적용</p>

1 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 20991 호, 2025.7.22>부칙 제 2 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 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 4 조 (제 27 조의 적용례)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본 정관 개정으로 변경되는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5 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36 조의 제 7 항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이사 후보자 약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사내이사	강민욱	1974.09.25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엔진부품생산기술팀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엔진부품개발팀장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사업장장 前) 한화임팩트(주) IMO 소속 現) 한화엔진(주) 생산부문장	없음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사내이사	김진영	1979.06.29	前) 한화디펜스 경영기획팀장 前) 한화디펜스 연구기획팀장 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관리팀장 現) 한화엔진 기획담당	없음	없음
		이사회			
기타비상무 이사	임성빈	1977.07.08	前) (주)한화 지원부문 前) 한화솔루션/케미칼 재무회계팀장 前) 한화솔루션(주) 재무회계 1 팀장 前) 한화에너지(주) 재무기획팀장 現) 한화임팩트(주) 경영지원실장 現) 한화엔진(주)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사외이사	유가영	1971.09.19	前)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제 1 기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現) 제 2 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現)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現) 한화엔진(주) 사외이사	없음	발행회사 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의 임기는 3년임.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는 모두 해당사항 없음.

[첨부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후보자 약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사외이사	김종환	1974.01.12	前) 삼성전자(주) 前) Bocconi Univ. 조교수 前) Manchester Business School 조교수 現) 연세대학교 회계학 교수 現)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現) 한화엔진(주) 사외이사	없음	발행회사 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김용환	1964.09.02	前) 영국 왕립공학학술원, 사우스햄턴대 객원석학 前) 일본 오사카대 특임교수 前) STX 엔진 사외이사 前)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객원교수 現)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교수 現) 서울대학교 로이드기금 연구센터 센터장 現) 국제수조협회(ITTC) 부의장, 동-남 아시아 대표 現) 한화엔진(주) 사외이사	없음	발행회사 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의 임기는 3년임.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는 모두 해당사항 없음.

[첨부 5]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약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추 천 인			
사외이사	유가영	1971.09.19	前)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제 1 기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現) 제 2 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現)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 現) 한화엔진(주) 사외이사	없음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 감사위원의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 종료 시까지임.

이사 보수한도(안)

○ 제 28 기(2026.1.1 ~ 2026.12.31) 이사보수 한도액 : 30 억원 (이사 7 명)

※ 이와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을 95,000 주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과 주식가치연계현금으로 부여함.

○ 제 27 기(2025.1.1 ~ 2025.12.31) 이사보수 집행액 : 16.7 억원

○ 제 27 기(2025.1.1 ~ 2025.12.31) 이사보수 한도액 : 30 억원 (이사 7 명)

※ 이와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을 95,000 주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과 주식가치연계현금으로 부여함.